

레지오 단원 교육 시 골든벨 예상문제

I. O/X문제

1. 레지오 제대보에 뿌레시디움의 이름을 새겨도 된다. (X)
2. 주회합의 제대 차림은 반드시 단장이 해야 한다. (X)
3. 꽃은 화분은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생화를 사용하지 못할 부득이 한 경우에만 조화를 이용할 수도 있다. (O)
4. 제대의 꽃은 단원이 자진해서 봉헌하고자 할 때 받아들일 수 있다. (O)
5. 주 회합 시 간부의 좌석은 지정되어 있지 않다. (X)
6. 일반단원들의 자리는 입단순서에 따라 정해진다. (X)
7. 주 회합 시 바치는 묵주기도의 신비는 전례시기나 요일에 제약을 받는다. (X)
8. 개인적으로 묵주기도를 바칠 때 자유의사에 따라 파티마의 구원송을 바칠 수도 있다. (O)
9. 예비단원은 수련기에도 활동의 의무를 동시에 부여 받는다. (O)
10. 행동단원의 자격은 본인이 교적이 있는 본당소속의 레지오 조직이 아니어도 된다. (X)
11. 예비단원의 수련 기간을 3개월간 연장해 줄 수 있다. 그러나 6개월 이내 선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뿌레시디움을 떠나야 한다. (O)
12. 수련기의 예비단원도 간부직을 맡을 수도 있다. (O)
13. 레지오 활동의 대원칙은 뿌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O)
14. 타 뿌레시디움 참관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X)
15. 활동 배당시 2인1조의 조별 배당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 활동을 배당할 수도 있다. (O)
16. 교구 평의회를 통하여 배당되는 기도나 신심행위 및 특별기도는 2시간의 주간활동 의무에 포함 되지 않는다. (O)
17. 주 회합에서 묵주기도를 바칠 때에는 개인지향을 둘 수 있다. (X)
18. 연도 활동은 별도로 활동배당을 하지 않아도 수행하고 활동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19.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상급평의회 레지오 공식적 업무, 순방, 레지오 주관 회의/행사/교육 /피정 참가시는 출석으로 인정된다. (O)
20. 뿌레시디움 주회합은 연휴나 여름 휴가철에 건너뛰거나 일정기간 쉬거나 할 수 있다. (X)
21. 레지오 제대보의 "Lagio Mariea" 글자체는 붉은 색깔은 성령을 의미한다. (O)
22. 건강이 좋지 않거나 고령단원은 단장의 허락으로 앉아서 기도할 수 있다. (O)
23. 매월 첫 주 회합 시 단장이 낭독하는 레지오 단원의 복무규정을 상훈이라 한다. (O)
24. 단원은 한 주간에 최소한 2시간을 실제로 활동에 바쳐야 한다. (O)
25. 활동을 배당하는 일은 단원의 역할이며, 활동을 수행하는 일은 단장의 의무이다. (X)
26. 단장은 예비단원에게는 교본읽기를 활동으로 적극 배당한다. (O)
27. 레지오 단가를 부를 때는 주 회합을 마치고 촛불을 끈 후 부를 수 있다. (O)
29. 레지오 활동의 대원칙은 뿌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O)
30. 뿌레시디움의 구성인원은 지역의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집단에 한정된 단원들로 구성할 수 있다. (X)

II. 주관식 문제

1. 묵주기도가 끝난 후 도착한 지각 단원은 혼자서 (시작기도)를 바친 후 주 회합에 합류한다.
2. 묵주기도 중일 때 도착한 지각 단원은 (시작기도) 바친 다음 (묵주기도)에 동참한다.
3. 까떼나를 바친 후 도착한 지각 단원은 (시작기도) 와 (까떼나)를 바친 후 주회합에 합류한다.
4. 조퇴 단원은 단장의 허락을 받아 아직 바치지 못한 기도와 (마침기도)를 바친 후 자리를 뜬다.
5. 백실리움은 성모상 중심에서 앞으로 (15)cm, 오른쪽으로 (15)cm에 놓는다.
6. 뿌레시디움이나 평의회 고유의 이름(호도)는 성모님의 (호칭), 성모님의 (특전), 성모님의 (행적)에

서 따 올 수 있다.

7. 까떼나는 라틴어로 (고리)를 의미하며, 까떼나의 본기도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성모의 노래인 (마니파캇)으로 되어 있다.
8. 개인적으로 바칠 때 묵주기도의 신비는 요일별로 어떤 신비를 바쳐야 하는지 적어보세요. : 월(환희), 화(고통), 수(영광), 목(빛), 금(고통), 토(환희), 일(영광)
9. 매월 첫 주 회합 시 단장이 낭독하는 레지오 단원의 복무규정을 (상훈)이라 한다.
10. 단원은 한 주간에 최소한 (2)시간을 실제로 활동에 바쳐야 한다.

I. O/X문제

1. 단장은 영적독서만 준비하고 훈화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 (X)
2. 단장이 유고시 부단장이 주 회합을 주관하고 그 자리를 승계할 수 있다. (O)
3. 쁘레시디움 간부의 임명은 꾸리아 단장이 최종 임명하고 꾸리아의 재차 추인을 한다. (O)
4. 기도를 바칠 때 기도문을 전부 외우는 단원은 기도문을 보지 않고 바쳐도 상관없다. (X)
5. 개인적으로 묵주기도를 바칠 때 자유의사에 따라 파티마의 구원송을 바칠 수도 있다. (O)
6. 영적 독서 시 교본을 낭독할 경우 독서 후에 성호경을 바친다. (X)
7. 행동단원의 자격은 본인이 교적이 있는 본당소속의 레지오 조직이 아니어도 된다. (X)
8. 비밀헌금 이외에는 쁘레시디움에서 돈을 걷는 행위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한다. (O)
9. 회계장부는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O)
10. 퇴단 하였다가 재 입단 할 때에는 3개월의 수련기간과 선서를 다시 해야 한다. (O)
11. 훈화는 영적지도자나 대리자가 담당하며, 불참 시 단장이 하거나 단장이 지명하는 레지오 경륜이 많거나 훈화할 만한 자격을 갖춘 단원이 할 수도 있다. (O)
12. 헌금이 끝난 후 성모상 앞에 두거나 주 회합 중에 비밀헌금을 계산해도 된다. (X)
13. 본당 안에 쁘레시디움을 설립할 때는 상급평의회의 정식인가를 받아야 되나 본당 신부님을 초빙할 필요는 없다. (X)
14. 쁘레시디움의 구성인원은 지역의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집단에 한정된 단원들로 구성할 수 있다. (X)
15. 쁘레시디움의 분단은 꾸리아의 요청이 있을 때는 받아들여야 한다. (O)
16. 본당 분할로 전출시 쁘레시디움 단위의 전출이 원칙이며, 전출하는 뽀레시디움은 원래의 차수가 그대로 유지된다. (O)
17. 올바르게 못하고 불완전한 뽀레시디움이 개선되지 않거나 오랫동안 잘못을 계속하고 있다면 차상급 평의회에 보고하고 해체해야 한다. (O)
18. 뽀레시디움의 간부는 투표하여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다. (X)
19. 수련기의 예비단원도 간부직을 맡을 수 있다. 수련기의 임시 간부직도 3년 임기의 일부로 계산한다. (O)
20. 분단 후 신설 뽀레시디움 단장으로 임명된 모체 뽀레시디움 단장은 그 첫 번째 임기(3년)을 다시 시작한다. (O)
21. 행동단원은 주 회합에 출석하고 활동을 수행하는 단원을 말한다. 아직 선서를 하지 않은 예비단원도 여기에 포함되므로 출석율에 반영된다. (O)
22. 예비단원이 수련기간을 3개월 연기한 경우 2차 3개월이 되기 전 언제라도 정단원으로써 준비가 갖추어지면 선서를 할 수 있다. (O)
23. 일단 퇴단한 단원이 재입단하는 경우에는 퇴단 후 경과된 기간에 관계없이 3개월의 수련기와 선서를 해야 한다. (O)
24. 전입단원은 전출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수련기와 선서가 필요하지 않다. (O)
25. 단원의 전출은 뽀레시디움 단장의 서명만으로 인정된다. (O)
26. 같은 본당 내에서는 꾸리아의 사전 승인 없이 전출과 전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O)
27. 협조단원이 마침기도문을 바칠 때 성모님께 대한 호도는 소속 뽀레시디움 호도를 하여야 한다. (X)

28. 협조단원은 꾸리아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아치에스에 참여 시킬 수 있다. (O)
29. 기도나 그 밖의 신심행위로 주간 활동의 의무를 채우지 못하며 활동의 일부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O)
30. 단장이 공석일 때는 부단장의 이름으로 서명하여 공문을 발송할 수 있다. (O)
31. 월간 레지오 마리아지는 공문이다. (X)
32. 특기사항(활동사례) 작성 시 활동 대상자의 성명은 기록해도 된다. (X)
33. 순방시 평의회는 방문자를 2인 1조로 각기 다른 뵤레시디움에서 1명씩 차출 지명할 수 있다. (O)
34. 타 뵤레시디움 참관은 출석으로 인정 할 수 없다. (O)
35. 우연한 기회에 수행한 활동(자유활동)도 주회합에 보고할 수 있으며, 뵤레시디움이 인정하면 정상적인 레지오 활동이 된다. (O)
36. 방문 활동은 출발부터 귀가까지의 시간이 모두 활동으로 인정된다. (O)
37. 활동 배당 시 2인1조의 조별 배당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 활동을 배당할 수도 있다. (O)
38. 교구 평의회를 통하여 배당되는 기도나 신심행위 및 특별기도는 2시간의 주간활동 의무에 포함 되지 않는다. (O)
39. 내용이 동일한 문서는 부수에 관계없이 1건으로 취급한다. (O)
40. 레지오의 모든 회합에서 구원송은 바치지 않기로 1998.2 세나투스에서 결정되었다. (O)
41.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상급평의회 레지오 공식적 업무, 순방, 레지오 주관 회의/행사/교육/피정 참가 시는 출석으로 인정된다. (O)
42. 제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레지오 조직을 분열시키는 단원, 조직에 상처를 입히는 단원, 동료단원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과도하게 표출하는 단원 등의 경우가 포함된다. (O)
43. 뵤레시디움 주회합의 일자와 시간 변경은 꾸리아에 통보할 필요가 없다. (X)
44. 뵤레시디움 주회합은 연휴나 여름 휴가철에 건너뛰거나 일정기간 쉬거나 할 수 있다. (X)
45. 훈화는 영적지도자나 그 대리자가 담당하며 불참 시에는 단장이 하거나 단장이 지명하는 경륜이 많거나 자격이 있는 단원이 할 수 있다. (O)

II. 주관식 문제

1. 레지오 제대보의 "Lagio Mariea" 글자체는 붉은 색깔인데, 색깔은 어떤 의미인가? (성령)
2. 까떼나를 바친 후 도착한 지각 단원은 (시작기도)와 (까떼나)를 바친 후 주 회합에 합류한다.
3. 개인적으로 바칠 때 묵주기도의 신비는 요일별로 어떤 신비를 바쳐야 하는지 적어보세요. : 월(환희), 화(고통), 수(영광), 목(빛), 금(고통), 토(환희), 일(영광)
4. 레지오 회합 시 묵주기도를 바칠 때는 파티마의 구원송을 바치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인가? (레지오의 마침기도에 구원송이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1998년 세나투스 결정)
5. 까떼나의 "내 영혼이" 부분은 (십자가)를 긋는다.
6. 회의록 낭독 후 단장의 수정사항 여부를 확인한 다음 (단장)은 반드시 회의록에 서명한다.
7. 조퇴 단원은 단장의 허락을 받아 아직 바치지 못한 기도과 (마침기도)를 바친 후 자리를 뜬다.
8. 발신 및 수신 등의 모든 공문에는 (백실리움) 표장과 (단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9. 내용이 똑같은 문서는 매수에 관계없이 (1건)으로 취급한다.
10. 회계가 결석한 경우에는 (단장)이 주 회합 전에 회계장부를 전달받아 대신 보고한다.
11. 뵤레시디움의 (야외행사)나 (뵤레시디움 친목회)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헌금 이외 적은 금액을 추렴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1992. Con)
12. 우연한 기회에 수행한 활동인 (자유활동)도 주 회합에 보고할 수 있으며, (뵤레시디움)에서 인정하면 정상적인 레지오 활동이 된다. 다만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13. 예외적으로 기도를 활동으로 배당할 수 있는 경우는 (교구장의 지시에 의한) 공동체의 기도, (세나투스(국가평의회), 레지아(교구평의회))의 결정에 따른 레지오 공동체의 기도 등이다.

14. 협조 단위 돌봄은 기도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 이상 돌보고 (쁘레시디움)에 보고를 해야 한다.
15. 상급평의회의 방문자가 있을 경우 방문자의 방문소감 등은 (기타시간)에 한다.
16.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의 고유 이름(호도)는 성모님의 (호칭), 성모님의 (특전), 성모님의 (행적)에서 따 올 수 있다.
17. 뿌레시디움 간부 선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레지오의 (정신)과 (교본)을 잘 이해하는 사람, 상급평의회에 대한 (순명)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다.
18. 뿌레시디움 간부에 대한 최종 임명은 (꾸리아 단장)에 의해서 임명된 후보자를 (꾸리아)에서 재차 추천하다고 생각함이 옳다.
19. 문제가 있는 뿌레시디움을 개편할 때는 꾸리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단장)도 함께 교체해야 한다.
20. 모든 간부의 임기는 3년이며, 한 번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고, 6년의 임기가 끝난 후 동일한 직책을 맡을 수 있을 경우는 (3)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다.
21. 노령으로 인한 환자단원의 경우 (장기 유고)로 처리하고 출석율은 산정하지 않는다.(마산Re.)
22. 뿌레포리움 단위(높은 등급 행동단위) 및 아듀포리움 (높은 등급 협조단위) 단원이 매일 바쳐야 할 신심 행위는 (미사 참례 및 영성체), (뗏세라의 모든 기도문-묵주기도 포함), (성무일도나 소성무일도)이다.
23. 본당의 소공동체 및 타 단체(예:구역장, 반장, 연령회원, 성가대, 전례, 사목위원 등)에서 수행한 봉사도 (뿌레시디움 단장)의 판단에 따라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마산Re.)
24. 단원의 자격 정지권은 (뿌레시디움)에 있지만 단위 제명의 결정권은 (꾸리아)에 있다.
25. 평의회 간부의 선출은 후보자가 한 명일 경우는 투표가 필요 없지만 (동의)와 (제청)을 거치고 회의록에 동의자와 재청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26. 평의회의 각종 문서 보존 연한은 단장계획서 (보존하지 않음), 출석부 및 회의록 (최초: 영구보존, 그 후 것: 5년이며 연차적 폐기), 회계장부 (영구보존), 기타 문서철 (5년이며 연차적 폐기)
27. 뿌레시디움 순방 시 방문자는 방문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평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28. 단원은 뿌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한 주간에 최소한 (2)시간을 실제로 활동에 바쳐야 한다.
29. 공문 발송 시 단장이 유고일 때는 (단장) 이름으로 부단장이 대리서명 한다.
30. 출석률 계산에서 (유고)와 (장기유고), (공석)는 출석률 계산에서 제외한다. 단 뿌레시디움 주 회합에서만 적용한다.
31. 다음의 예시를 보고 출석률을 계산하여 적어보세요.
[예시) 단위 10명 중 8명 출석, 1명 유고 결석, 1명 무고결석 일 경우]
(8/9 = 88.9 = 88%, 소수점 이하 절하)